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1328호 2018. 4. 9.(월)

공 고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 제339회 목포시의회 부의 안건 공고 5

기 타

- 시정알림판 6

회람							
----	--	--	--	--	--	--	--

목포시 공고 제2018-5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4. 9.

목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18. 4. 9. ~ 2018. 4. 23. (15일간)
2.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8. 4. 4.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조 * 칠
	주 소	목포시 상동 37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물 부존재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내용)		위 치 : 목포시 상동 92 건축물현황 : 지상1층, 주택, 76.03㎡ 소유자현황 : 조 * 칠 목포시 상동 37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시 건축행정과 (2061-270-87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견 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목포시 건축행정과
 - 연 락 처 : 061) 270 - 8786
 - 담 당 자 : 안 광 호

목포시 공고 제2018-535호

목포시의회 부의 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9.

목 포 시 장

□ 부의안건 명

-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목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목포시 도시관리계획(대학교)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 정 알 림 판

2018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접수기간 : 2018. 4. 13.(금)~5. 2.(수) [20일간]
- 열람장소
 - 방문 및 전화열람 : 24개소 (민원봉사실 및 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 ⇒ 정보공개 ⇒ 부동산정보 ⇒ 개별공시지가열람
- 의견제출
 - 제출사항 :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 의견가격 제시
 - 제출대상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목포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제출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시, 자가 재검증 실시

민원봉사실 ☎ 061-270-3479

2018년 목포시 상반기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2018. 4. 2.(월)~4. 30.(월)
- 참여대상 : 목포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전 국민)
- 공모주제
 - 지역경제활성화 : 기업유치, 관광객유치, 해양수산업 활성화
 - 시정혁신 : 시정 시민 참여 확대, 시민·공직사회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
 - 인구감소 극복 : 인구유입 및 출산율 제고 방안,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삶의 질 개선 : 환경·보건 등 시민 삶의 질 높이기
 - 10년 후 목포의 성장동력 : 미래의 핵심 성장산업 발굴

○ 참여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epeople.go.kr) ⇒ 국민행복제안 ⇒ 공모제안(담당기관 '목포시' 선택)
-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 ⇒ 참여마당 ⇒ 시민참여 ⇒ 시민제안 ⇒ 제안하기
- 우편 :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앞(우 58613)
※ 접수 마감일 소인 분까지
- 팩스 : 061-270-3578
- 방문 : 목포시 관내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과 ☎ 061-270-3211

시 정 알 림 판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지원 사업 안내

- 사업목적 :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의 옷에 신원 확인이 가능한 인식표를 부착하여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
- 대 상 :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
- 비 용 : 무 료
- 신청기관 :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 신청서류는 전화로 문의)
- 신청절차 : 치매안심센터 방문 ⇨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 코드 번호 부여, 인식표 제작 ⇨ 배부



목포시치매안심센터 ☎ 061-270-4271~5

목포만의 식도락 맛집(M-Food) 추천 · 신청 접수



- 기 간 : 2018. 4. 9.(월)~4. 30.(월) [3주간]
- 대 상 : 주로 식사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중 희망업소
 -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소(행정처분 받지 않은 업소)
 - ※ 신청 제외 : 기존 지정맛집(모범·명인·명가), 체인 가맹점, 주류전문 취급 업소
- 신청장소 : 보건위생과, 한국외식업중앙회 목포시지부
- 신청방법 : 팩스 및 방문접수
 - 팩스 : 보건소 270-3597, 외식업 2812-8186
- 제출서류 : 신청서, 대표음식 및 업소 소개서 등

보건위생과 ☎ 061-270-8941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접수

- 접수기간 : 연 중
- 내 용 : 목포시 발전을 위한 사업 공모
- 참여방법 : 시 홈페이지, 주민(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서면 제출
 - ※ 인터넷 접수 : 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정보 > 목포시 발전을 위한 사업공모
- 대상사업
 - 시민 생활주변 불편해소 소규모 투자사업
 -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 등
 - ※ 불가(보류)사업 : 부지미확보된 주차장, 주민쉼터 조성사업, 사유지 벽화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등



기획예산과 ☎ 061-270-3483